

2013. 11. 25.(월)13:00
 석남3동 주민센터 회의실

- 2013年度 11月中 統長 月例會議 -

會 議 資 料

-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 회 | ----- | 팀 장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1통장 표창장 수여 | ----- | 동 장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인 사 말 씀 | | |
| ○ 동 장 | | |
| ○ 회 장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당면현안사항 전달 | ----- | 팀 장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폐 회 | ----- | 팀 장 |



석남3동 주민센터

<http://seongnam3.seo.incheon.kr>

회 의 자 료

1. 동절기 설해예방 순찰조 운영

■ 운영개요

- 운영기간 : 2013. 12 ~ 2014. 3. 15
- 참여단체 : 통장협의회 외 4개 단체
- 주요임무
 - 설해 취약지(경사지, 응달지, 교차로 등) 순찰
 - 설해지역은 신속하게 제설 및 제빙 작업 실시
- 순찰지역
 - 서달로, 절골부락, 마가의다락방, 경인고속도로 측도 등
- 취약지역 우선제설지역 위치도 첨부

2. 2014년도 공공근로 신청 안내

■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4. 1. 2. ~ 03. 14
- 선발예정인원 : 70명 이내
- 신청 및 접수기간 : 2013. 11. 25 ~ 11. 29 (5일간)
- 신청 및 접수 대상 :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미취업자(공고일 기준)
- 신청장소 : 신청일 현재 주소지 주민센터
- 신청 구비서류 : 신청서(동주민센터), 건강보험증, 신분증

3. 11월 주민참여 행사계획

- SK 환경 위해성 검증단 주민설명회
 - 일 시 : 2013. 11. 27 (수) 16:00~
 - 장 소 : 서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
 - 주 관 :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(서구청 환경보전과)
 - 주요내용 : SK 인천석유화학(주) 공장 증설에 따른
환경·안전·보건분야 검증결과 설명 등

- 『천마초교서측구역』 정무부시장 주민과의 간담회
 - 일 시 : 2013. 11. 27 (수) 19:00~20:00
 - 장 소 : 석남3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
 - 주 관 :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
 - 주요내용 : 사업계획(안)보고 및 주민의견 청취

- 통리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연주회
 - 일 시 : 2013. 11. 28 (목) 15:30~
 - 장 소 : 부평아트센터(해누리극장)
 - 참석대상 : 통장 임원진 6명
 - 주 관 : 인천광역시 시립예술단

- 금난새와 함께하는 인천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연주회
 - 일 시 : 2013. 11. 29 (금) 19시
 - 장 소 :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(990석)
 - 주 관 : 인천종합문화회관, 인천광역시 서구
 - 초 대 권 : 동주민센터 선착순 배부 [7세 미만 출입제한]



▣ 인천광역시 서구 반상회 홍보자료

『 별도 첨부 』

▣ 인천광역시 반상회 홍보자료

『 별도 첨부 』

▣ 중앙정부 반상회 홍보자료

『 별도 첨부 』

석남3동 취약지역 제설 우선순위 및 자생단체 지정 현황

1순위 위치 : 서달로 116번길, 서달로 130번길
문성하이츠타운 8동,14동 옆
서달로 163번길

해당지역 담당통장 : 6통,7통,8통,
9통,10통장



2순위 위치 : 서달로 149번길, 서달로 137번길
신동아 아파트 옆길, 신광아파트 옆길
길주로 135번길, 석남제1고가교 옆길

해당지역 담당통장 : 1통,5통,3통,4통,
11통,14통,15통장



3순위 위치 : 석남제1고가교 옆길, 효성아파트 앞길, 석남지하차도 옆길, 길주로136번길, 서달로67번길, 서달로49번길, 서달로37번길, 서달로23번길, 서달로11번길

해당지역 담당통장 : 16통, 17통, 18통, 19통, 22통, 24통, 23통, 25통



4순위 위치 : 천마초등학교 오르막 길, 서달로 20번길

해당지역 담당통장 : 26통장, 24통장



“우리 함께 내집 앞 눈 치우기”



내집·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.

□ 눈을 치워야하는 순서는?

○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

: 소유자 ⇒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

○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

: 점유자 ⇒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

※ 단,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름



2006년 5월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
책임에 관한 조례 시행

□ 눈을 치워야하는 범위는?

○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

○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
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

□ 눈은 언제까지 치워야하는 하나요?

○ 주간(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)에 내린 눈은 그친
때부터 3시간 이내

○ 야간(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)에 내린 눈은
다음날 오전 11시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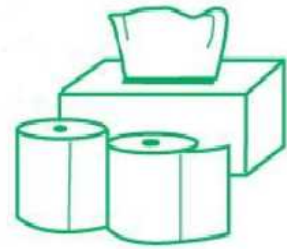
※ 단,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
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



내집·내점포 앞 제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가족
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



종이팩은 일반폐지와 분리하여 배출합시다!



종이팩이란? 100%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펄프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포장재를 말하며, **우유팩 · 주스팩 · 두유팩 · 기타 음료팩** 등이 해당됩니다.



- ☞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은 연간 6.5만톤.
- ☞ 종이팩 재활용만 잘해도
연 650억원의 외화 대체효과!
- ☞ 20년생 나무 130만 그루를 심는 효과!

"우유팩, 주스팩과 같은 종이팩을 모아서 거주하시는 동 주민센터에 가져 오시면 종이팩으로 만든 친환경화장지를 드립니다."

- 장 소 : 동 주민센터
- 이용방법 : 종이팩 수집 → 동 주민센터 → 화장지 교환
- 배출방법 :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서 건조

[교환 기준]

종이팩 (우유 · 주스 · 두유)	용량(ml)	수집량(매)	화장지 교환
	200	100	화장지 1롤
	500	55	
1,000	35		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[청소행정과:560-4420]

아동학대 신고안내(1577-1391)



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

아동학대란?

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,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.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 등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.

자주 나타나는 학대 증후로는 신체적 상흔이나 상처, 극단적인 행동과 언어장애,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,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, 청결하지 못한 외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아동학대 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(1577-1391) 또는 경찰서(112)로

아동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되니, 학대받은 아이를 발견하신 경우, 망설이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특히 의사,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복지법이 정한 22개 직업군이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

아동보호전문기관은?

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, 보호,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설치된 기관입니다.

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(보건복지부),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(각 지자체) 5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거주지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락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(www.korea1391.org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

아동은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. 아동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해야,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.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하는 일들이 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망치는 일임을 기억하고, 사소한 일이라도 학대라고 의심되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주세요

제공부서 :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(2023-8739), 아동보호전문기관(1577-1391)



김장철 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안내

❖ 김장철을 맞이하여 가정내에서 배출하는 김장쓰레기로 인한 무단투기와 용기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김장시 배출되는 생 배추 및 무 잎에 대하여 『김장쓰레기 전용봉투』를 사용토록 안내하여,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.

□ 김장쓰레기 배출요령

○ 김장철 쓰레기는 『김장쓰레기 전용봉투』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배출요일에 맞춰 배출

▷ 김장쓰레기란?

- 김장시 버리게 되는 잔재로써 절이지 않은 생 배추잎, 무잎
(단, 절임배추는 기존 배출방식인 음식물통으로 배출)
- 전용봉투 : 20리터 분홍색 전용봉투
- 판매장소 : 기존 종량제 봉투 판매소
- 판매가격 : 620원/20리터
- ※ 배출비용은 기존 음식물통으로 배출하는 금액과 동일합니다.
안심하세요~~~

○ 문의처

- 구청 청소행정과 : 560-4410
- 시설관리공단 : 580-1180

【 부서명 : 청소행정과 ☎ 560 - 4413 】



배회 가능 어르신 「인식표」 신청하세요~

❖ 실종치매노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, 무연고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치매로 인해 인지력이 상실되어 실종 될 수 있는 어르신에 대해 인식표를 배부하여 노인실종을 예방하고자 함

□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

○ 사업개요

- 보급대상 :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
- 신청기간 : 연중 계속
- 신청기관 : 서구치매센터 (☎032-567-9115)
- 준 비 물 : 최근 6개월이내 증명사진 1장, 신청서
- 보급비용 : 무료

○ 인식표 보급 방법

- 보급 희망자 → 서구치매센터로 신청서 제출 →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신청자료 입력
- 중앙치매센터 : 코드번호 부여, 인식표 제작 → 서구치매센터로 인식표 발송 → 신청가족에게 배부
- 보급 신청자 : 인식표를 실종우려 어르신 옷에 부착

※인식표 이미지

가족들이 찾고 있는 분입니다.
연락주세요!
경찰청 국번없이 182
희망의 전화 국번없이 129
고유번호 K00001

【부서명 :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☎ 560 - 5062】

2014, 1월 100㎡ 이상 음식점 금연확대

2014년 1월부터 현재 150㎡이상의 100㎡이상 음식점, 호프집,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 영업소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됨

□ 음식점의 소유자, 점유자, 관리자 의무사항

-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 부착
- 표시방법 : 흡연금지를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

(예시)

	금 연 건 물	<건물>
	금 연 시 설	<시설>
	금 연	<그 밖의 경우>

□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

- 흡연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, 음식점 업주가 판단하여 설치여부 결정
- 설치기준
 -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
 - 화장실, 복도,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설치금지
 -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설치 금지
 -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,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 부착

□ 위반 시 과태료 부과

-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
 - 1차 위반 170만원, 2차 위반 330만원, 3차 위반 500만원
-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
 - 흡연자 : 과태료 10만원

【 부서명 :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☎ 560 - 5045 】



겨울철 수도미터 동파방지 요령

겨울철 수도미터 동파방지 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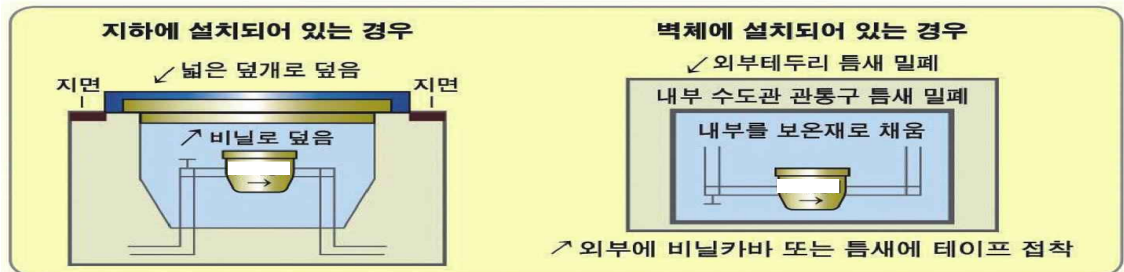
● 동파의 원인?

- 영하의 날씨가 지속 될 때
- 겨울철 수돗물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

● 동파방지 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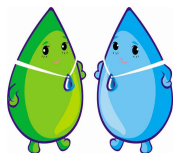
- 수도미터 보호통 내부로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통 뚜껑이 열려있는지 확인 합시다.
-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, 수도미터, 옥상물탱크는 스티로폼 또는 보온재 등으로 보온 합시다.
- 수도미터 보호통 내부에 고인 물은 제거하고 보호통 내부는 동파방지 팩 등 보온재를 채워 보온합시다.
- 옥외 수도전은 동결·동파방지를 위하여 앞 수도꼭지 밸브는 열어 놓고 뒷 밸브만 사용합시다.
- 장기출타 등 수돗물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사업소로 급수중지 신청을 합시다.

수도미터 보호통(함) 보온 방법



● 동결·동파 조치요령

- 동파방지팩 설치 및 동파된 수도미터는 수도사업소에 연락 주시면 무상으로 보급·교체하여 드립니다.
- 수도미터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얼어붙은 수도관이나 수도미터는 파열예방을 위하여 50~60℃ 정도의 따뜻한 물이나 헤어드라이기로 서서히 녹여야 합니다.



- ◆상수도 콜센터 : 국번 없이 121
- ◆북부수도사업소 : 720-3600
- ◆중부수도사업소 : 720-3300
- ◆서부수도사업소 : 720-3800
- ◆남동부수도사업소 : 720-3500
- ◆강화수도사업소 : 720-3900

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

2014인천AG 및 인천장애인AG 자원봉사자 모집 · 홍보

■ 자원봉사자 모집 개요

- 신청기간 : 2013. 11. 1 ~ 2014. 1. 31 (3개월)
- 신청분야 : 일반행정, 안내, 교통·환경정리, 수송, 통역 등
- 신청자격 : 만 16세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
- 신청방법 :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준·구 자원봉사센터

■ 대회 및 자원봉사 소개

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http://vt.incheon2014ag.org	홈페이지	제11회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http://incheon2014apg.org
2014. 9. 19 ~ 10. 4(16일간)	대회기간	2014. 10.18 ~ 10. 24(7일간)
45개국 35개 종목 23,166명	대회규모	41개국 23개 종목 4,800명
18,500명	모집인원	5,000명
2014. 9. 19 ~ 10. 4 (16일간)	봉사기간	2014. 10.13 ~ 10. 26 (14일간)
인천광역시 및 9개 협력도시 (서울, 화성, 안양, 하남, 고양, 수원, 부천, 고양, 충주)	봉사장소	인천광역시 및 2개 협력도시 (안양시, 하남시)
자원봉사 모집센터 ☎032-458-2618	전화문의	자원봉사팀 ☎032-458-5291~6

불법명의자동차(속칭 대포차) 신고받습니다

□ 추진배경

- 불법명의 자동차(속칭 ‘대포차’)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, 자동차 검사 미필,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,
 - 과속, 신호 위반,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 사고를 유발시키고,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음
- 따라서, 정부는 이러한 불법명의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고자 범정부적인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방안을 마련·시행할 계획임

□ 신고대상 및 기간

- (신고대상)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, 교통범칙금,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
 - (신고기간) '13. 6. 28(금)부터 일선 시청, 군청, 구청 차량등록관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며, 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(www.ecar.go.kr)
 - (구비서류) 신분증 지참, 신청서는 행정관청에 구비되어 있음
 - (향후대책) 속칭 대포차로 신고접수된 차량은 일선행정공무원 등과 지속적인 현장단속 실시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실시예정임
- 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자동차등록행정관청에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제공 :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☎ 044-201-3843

주택 화재예방 안전수칙

【 주택 화재예방 안전수칙 】

-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반드시 규격전선을 사용한다.
-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 사용을 금한다.
- 가스는 누설 확인 등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.
- 가스렌지에 음식물 등을 올려 놓고 자리를 비우거나 잠을 자지 않도록 한다.
- 외출 시에는 모든 화기의 안전을 점검한다.
- 평소 어린이에 대한 불조심 교육을 철저히 한다.
- 난방연료는 불을 끄고 나서 주입하고 이동식 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.
- 잠자리에서는 절대금연 해야 하며, 재떨이는 불씨를 확인 후 처리한다.
- 계단·출입구에는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다.
- 비상구는 항상 대피가 가능하도록 개방한다.
- 가정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.



【 인천남동소방서 ☎ 870-5256~9 】

모든 청소년을 위한 신분증! 「청소년증」을 소개합니다.

□ 청소년증이란?

- 청소년증은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, 금융거래 등을 위한 신분 확인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·보조하는 고궁, 박물관, 공원, 공공시설 이용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무료 또는 할인의 우대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음.

※ 근거 :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(청소년의 우대) 및 제4조(청소년증)

<청소년 할인혜택 현황(예시)>

- 수송시설 : 버스(고속버스 제외) 지하철 20%, 여객선 10% • 궁·릉 : 50%
 - 박물관 : 면제~50% 내외 • 미술관 : 30~50% 내외 • 공원 : 면제~50% 내외
 - 공연장(자체기획공연) : 30~50% 내외 • 유원지 : 30~50% 내외 • 영화관 : 500~1,000원 등
- ※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청소년증 발급받으려면?

- 대상 : 만 9~18세 이하 청소년
- 신청방법 : 청소년 본인이 직접 사진 1매(반명함판)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
- 청소년증 발급 절차

-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(신청) → '행복 e음' 시스템 등록 → 한국 조폐공사(접수·발급) → 시군구(등기우편발송) → 읍면동(개별교부)

※ 청소년증을 대여·양도한 자 또는 대여·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(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)

자료제공 :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☎ 02-2075-8616

임차인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보호
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도입 -

- “전세보증금반환보증”을 통해 전세세입자 안전장치 마련
 -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상품으로, 해당상품에 가입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.

- 수도권 3억원 이하, 기타지역 2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보호
 - 보증대상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(다가구), 연립, 다세대, 주거용오피스텔로 수도권은 3억원이하,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보증가입이 가능하다.

- 임차인 월 1만6천원에 보증 가입 (1억원 기준)
 - 보증료율은 개인임차인의 경우 0.197% 수준으로 보증료가 매우 저렴(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월 1만6천원)하고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보증발급이 용이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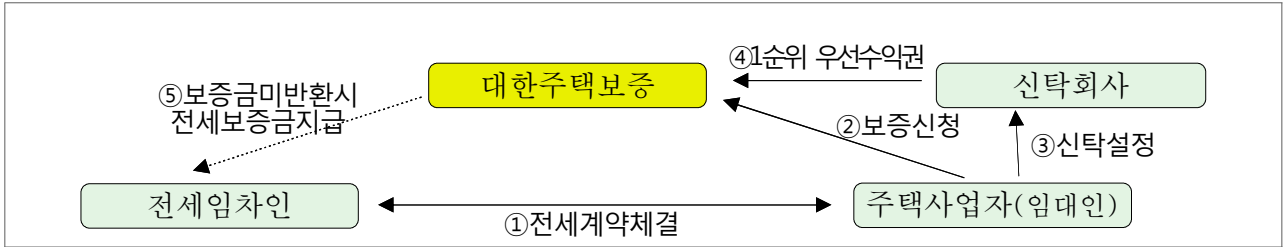
- 임대시장 활성화에 기여
 - 임대인은 세입자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,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상품으로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는 물론 임차인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첨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개요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

◆ 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(주택사업자용 / 일반용)





보증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단지규모 20세대 이상인 아파트(주상복합주택 포함) - 일반용의 경우 단독주택(다가구), 연립다세대, 주거용 오피스텔, 아파트 포함
보증책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책임
보증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계약 기간 2년 이상의 전세계약 ■ 전세계약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(법인 임차인 제외) ■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이하, 그 외 지역 2억 이하
보증신청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채무자(주택사업자) - 일반용은 보증채권자(임차인)
보증채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임차인(개인, 법인)
주채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택사업자 - 일반용은 임대인 (개인인 주택사업자 및 법인 제외)
보증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택가액의 90% 이내에서 선순위채권 등 차감한 잔액 - 주택사업자용의 경우 시행·시공이 다른 경우 시공사 미입보시 80% - 일반용은 주택유형에 따라 90%~70% 적용
보증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세보증금 전액
보증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후 1개월까지
담보취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증대상주택 담보신탁(1순위 우선수익권) - 일반용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수
연대보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증금액 및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80% 초과시 초과분 시공사 연대입보 - 일반용은 보증채권자(임차인) 보증신청에 따른 연대입보 제외
보증사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전세보증금이 미상환되는 경우 ■ 전세목적물의 경·공매 배당 후 미수령액이 있는 경우
보증이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증사고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
보증료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택사업자 신용등급별 연 0.229% ~ 1.417% - 일반용은 0.197% (개인 임차인), 0.297% (법인 임차인)

